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29 호  
2017년7월7일(금)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177호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예외 적용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7-1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승인(신고)번호 제2017-58, 59호)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363호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5
- 여수시 공고 제2017-1364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17-1369호 도로지정공고(주삼동 931-8 외 1필지) /16
- 여수시 공고 제2017-1371호 도로지정공고(둔덕동 189-56) /17
- 여수시 공고 제2017-1372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17-138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19

【규 칙】

- 여수시 조례 제2017-1275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 여수시 조례 제2017-1276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24
- 여수시 조례 제2017-1277호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여수시 조례 제2017-1278호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여수시 조례 제2017-1279호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8
- 여수시 조례 제2017-1280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여수시 조례 제2017-1281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여수시 조례 제2017-1282호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회									
람									

# 공 고(안)

여수시 고시 제 2017- 177 호

##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예외 적용 고시

「주차장법」 제14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별표 1의 단서 조항의 공영주차요금과 비고란의 그 밖에 1급지에 포함할 공영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예외적용 및 1급지 포함 공영주차장 고시
2. 근거법규 : 「주차장법」제14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6조
3. 공고내역

#### 가. 공영주차장 요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은 소형기준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요금 5,000원을 적용하나 다음 주차장에는 예외요금을 징수한다.

#### 1) 주차장명

○ 오동도 공영 주차타워(여수시 오동도로 116)

#### 2) 주차요금

자동차 구분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소형	200원	5,000원	10,000원
대형	300원	8,000원	16,000원

나. 별표 1의 비고란 1급지에 포함할 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 1) 돌산공원 공영주차장(여수시 돌산읍 799-76번지 일원)
- 2) 향일암(임포) 공영주차장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70-4)

여수시 고시 제2017-18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7-58	2017.7.6.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7.7.10.	2017.11.13.	화정면 낭도리 1314-11 지선 공유수면	찾아가고 싶은 섬 낭도 조성사업 (여산지구)
2017-59	2017.7.6.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7.7.	2017.8.31.	돌산읍 군내리 980-12 지선 공유수면	돌산읍 서외항 선착장 연장공사

2017. 7.

여 수 시 장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미평1지구, 화정개도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미평1지구 : 강\*자 외 10명

-화정개도지구 : 강\*원 외 94명

2. 공고기간 : 2017. 7. 7. ~ 7. 21. (16일간)

3. 공고장소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6.

# 여 수 시 장

##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면적(m <sup>2</sup> )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연번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토지							소유자		반송유
	시·군·구	동·리	지번	지목	구분	면적(m <sup>2</sup> )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구분	증가한 면적(m <sup>2</sup> )	감소한 면적(m <sup>2</sup> )	폐쇄	주소	성명	
1	여수시	개도리	468	전	1	1848	468	전	1848.0	1	0.0	0.0		여수시 구봉1길	강*원	폐 부 재
	여수시	개도리	575	전	1	1256	575	전	1040.0	1	0.0	-216.0				
	여수시	개도리	577	대	1	268	577	대	384.3	1	116.3	0.0				
2	여수시	개도리	575-1	대	1	56	575-1	대	142.6	1	86.6	0.0		여수시 구봉1길	강*숙	폐 부 재
	여수시	개도리	582	대	1	231	582	대	231.0	1	0.0	0.0				
3	여수시	개도리	574	대	1	681	574	대	635.7	1	0.0	-45.3		여수시 충민공원길	강*호	폐 부 재
	여수시	개도리	574-1	대	1	450	574-1	대	445.3	1	0.0	-4.7				
4	여수시	개도리	220-2	전	1	185	220-2	전	185.0	1	0.0	0.0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강*곤	이 사 불 명
	여수시	개도리	220-3	전	1	175	220-3	전	210.6	1	35.6	0.0				
5	여수시	개도리	1086- 2	대	1	231	1086-2	대	240.3	1	9.3	0.0		여수시화정면 개도화산3길	고*심	폐 부 재
6	여수시	개도리	77-1	전	1	232	77-1	전	232.0	1	0.0	0.0		전주시덕진구 견훤로	김*규	이 사 불 명
7	여수시	개도리	73	대	1	377	73	대	364.0	1	0.0	-13.0		여수시 장성1길	김*은	폐 부 재
8	여수시	개도리	111-3	전	1	159	111-3	전	175.7	1	16.7	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김*배	폐 부 재
	여수시	개도리	111-6	전	1	228	111-6	전	228.0	1	0.0	0.0				
9	여수시	개도리	827-1	전	1	1484	827-1	전	1484.0	1	0.0	0.0		여수시봉계대 곡길	김*숙	폐 부 재
10	여수시	개도리	827-1	전	1	1484	827-1	전	1484.0	1	0.0	0.0		여수시봉계대 곡길	김*순	폐 부 재
11	여수시	개도리	1549- 4	전	1	364	1549-4	전	364.0	1	0.0	0.0		여수시 여문2로	김*례	폐 부 재

12	여수시	개도리	1419-2	대	1	205	1419-2	대	231.5	1	26.5	0.0		서울특별시 송파구가락로 11길	김*용	기타
	여수시	개도리	1420-4	임	1	167	1420-4	임	107.9	1	0.0	-59.1				
13	여수시	개도리	1673-1	전	1	257	1673-1	전	247.9	1	0.0	-9.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김*영	기타
14	여수시	개도리	1555-1	도	1	49	1555-1	도			0.0	-49.0	폐쇄	여수시 남면 건너물길	김*길	수취불명
	여수시	개도리	1555-3	전	1	217	1555-3	전	283.4	1	66.4	0.0				
	여수시	개도리	1555	전	1	634	1555	전	360.1	1	0.0	-34.9				
	여수시	개도리					1555-4	전	239.0	1	0.0	0.0				
15	여수시	개도리	127	대	1	228	127	대	228.0	1	0.0	0.0		인천광역시남 구주안로7번길	김** 만	수취불명
16	여수시	개도리	65-1	대	1	225	65-1	대	184.6	1	0.0	-40.4		여수시돌산읍 강남동로	김*현	폐문부재
17	여수시	개도리	827	전	1	1941	827	전	1941.0	1	0.0	0.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김*래	폐문부재
18	여수시	개도리	1596	전	1	23	1596	전			0.0	-23.0	폐쇄	여수시 구봉길	김*봉	폐문부재
19	여수시	개도리	1410	전	1	303	1410	전	339.8	1	36.8	0.0		여수시여서로	김*현	폐문부재
20	여수시	개도리	1236	전	1	410	1236	전	410.0	1	0.0	0.0		여수시 관문서4길	김*석	폐문부재
21	여수시	개도리	1419-1	대	1	139	1419-1	대	307.3	1	168.3	0.0		여수시여서로	김*원	폐문부재
22	여수시	개도리	130	대	1	251	130	대	251.0	1	0.0	0.0		여수시구봉길	김*안	폐문부재
23	여수시	개도리	524-3	도	1	7	524-3	도			0.0	-7.0	폐쇄	여수시 고소6길	김*심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524-4	도	1	43	524-4	도			0.0	-43.0	폐쇄			
24	여수시	개도리	1658-5	전	1	110	1658-5	전	110.0	1	0.0	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김*종	기타
	여수시	개도리	1659	대	1	390	1659	대	380.5	1	0.0	-9.5				

	여수시	개도리	1663	전	1	2056	1663	전	1821.6	1	0.0	-234.4				
25	여수시	개도리	1394	전	1	1233	1394	전	1223.6	1	0.0	-9.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11길	김*원	기타
26	여수시	개도리	613	대	1	215	613	대	215.0	1	0.0	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184번길	김*로	기타
27	여수시	개도리	809	묘	1	169	809	묘	169.0	1	0.0	0.0		여수시화정면여석안길	김*협	이사불명
28	여수시	개도리	1590	답	1	498	1590	답	498.0	1	0.0	0.0		여수시신월2길	김*수	폐문부채
29	여수시	개도리	136-3	임	1	1566	136-3	임	1566.0	1	0.0	0.0		여수시충민로	김*식	폐문부채
	여수시	개도리	136-4	임	1	605	136-4	임	378.1	1	0.0	-226.9				
30	여수시	개도리	1396	대	1	486	1396	대	486.0	1	0.0	0.0		여수시좌수영로	김*자	이사불명
31	여수시	개도리	65-2	대	1	87	65-2	대	87.0	1	0.0	0.0		여수시화정면월항안길	김*철	이사불명
32	여수시	개도리	1584-1	묘	1	2	1584-1	묘	2.0	1	0.0	0.0		여수시 구봉길	김*관	수취불명
33	여수시	개도리	189-1	대	1	212	189-1	대	192.4	1	0.0	-19.6		여수시광무5길	김*숙	폐문부채
34	여수시	개도리	1230	전	1	215	1230	전	215.0	1	0.0	0.0		여수시화정면호령길	김*욱	이사불명
	여수시	개도리	1655-2	대	1	416	1655-2	대	400.2	1	0.0	-15.8				
35	여수시	개도리	1519	답	1	883	1519	답	706.6	1	0.0	-176.4		여수시여서로	김*남	폐문부채
	여수시	개도리	1601-2	전	1	1638	1601-2	전	1267.7	1	0.0	-83.5				
	여수시	개도리					1601-3	전	286.8	1	0.0	0.0				
36	여수시	개도리	832	전	1	1921	832	전	1908.3	1	0.0	-12.7		여수시여서로	김*주	폐문부채
	여수시	개도리	1410-1	전	1	345	1410-1	전	329.9	1	0.0	-15.1				
37	여수시	개도리	203	대	1	241	203	대	241.0	1	0.0	0.0		여수시	김*홍	폐문

	여수시	개도리	234	전	1	258	234	전	258.0	1	0.0	0.0		선원4길		부재
	여수시	개도리	239	전	1	1339	239	전	1357.1	1	18.1	0.0				
38	여수시	개도리	128	전	1	2555	128	전	2473.2	1	0.0	-81.8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7번길	김*배	수취불명
39	여수시	개도리	1568-1	대	1	256	1568-1	대	256.0	1	0.0	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	김*완	기타
40	여수시	개도리	842-1	전	1	592	842-1	전	567.4	1	0.0	-24.6		여수시 봉계대곡길	김**순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842-2	대	1	317	842-2	대	317.0	1	0.0	0.0				
	여수시	개도리	842-3	대	1	20	842-3	대			0.0	-20.0	폐쇄			
41	여수시	개도리	1390-1	대	1	314	1390-1	대	314.0	1	0.0	0.0		광주광역시광산구광장덕로95번길	김*식	폐문부재
42	여수시	개도리	603-1	도	1	7	603-1	도			0.0	-7.0	폐쇄	여수시 문수북9길	김*일	수취불명
	여수시	개도리	603	도	1	3	603	도			0.0	-3.0	폐쇄			
	여수시	개도리	1090	대	1	367	1090	대	314.2	1	0.0	-52.8				
43	여수시	개도리	1125	대	1	327	1125	대	327.0	1	0.0	0.0		순천시백연길	문*용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1127	대	1	261	1127	대	261.0	1	0.0	0.0				
44	여수시	개도리	714-7	대	1	206	714-7	대	206.0	1	0.0	0.0		여수시여문2로	문*주	폐문부재
45	여수시	개도리	553	대	1	169	553	대	194.4	1	25.4	0.0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52번길	문*원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554	대	1	261	554	대	249.8	1	0.0	-11.2				
	여수시	개도리	559	전	1	1031	559	전	1031.0	1	0.0	0.0				
46	여수시	개도리	524-5	전	1	287	524-5	전	287.0	1	0.0	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문*선	기타
	여수시	개도리	1117	대	1	251	1117	대	251.0	1	0.0	0.0				

														서성일로110 5번길		
47	여수시	개도리	72	대	1	264	72	대	303.2	1	39.2	0.0		여수시 신월로	문*희	폐문 부재
48	여수시	개도리	714-9	대	1	66	714-9	대	66.0	1	0.0	0.0		부천시원미구 충동로	문*문	폐문 부재
49	여수시	개도리	635-1	전	1	1173	635-1	전	1173.0	1	0.0	0.0		여수시 무선4길	문*언	폐문 부재
50	여수시	개도리	454	대	1	198	454	대	198.0	1	0.0	0.0		여수시 화정면 개도화산길	문*수	이사 불명
51	여수시	개도리	1242	전	1	212	1242	전	141.9	1	0.0	-70.1		여수시 관문5길	박*비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1243	대	1	271	1243	대	347.0	1	76.0	0.0				
52	여수시	개도리	1598	전	1	215	1598	전	199.8	1	0.0	-15.2		여수시화정면 모전길	박*석	이사 불명
53	여수시	개도리	700-1	대	1	463	700-1	대	463.0	1	0.0	0.0		광양시광양읍 임기1길	배*숙	폐문 부재
54	여수시	개도리	632	전	1	1500	632	전	1500.0	1	0.0	0.0		여수시광무북 4길	배*심	폐문 부재
55	여수시	개도리	518-4	대	1	192	518-4	대	232.2	1	40.2	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9길	변*두	이사 불명
56	여수시	개도리	520-1	도	1	10	520-1	도			0.0	-10.0	폐쇄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2길	변*문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520	대	1	218	520	대	218.0	1	0.0	0.0				
	여수시	개도리	719	묘	1	304	719	묘	304.0	1	0.0	0.0				
57	여수시	개도리	832	전	1	1921	832	전	1908.3	1	0.0	-12.7		여수시 여서로	김*주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1410- 1	전	1	345	1410-1	전	329.9	1	0.0	-15.1				
58	여수시	개도리	1116	대	1	278	1116	대	278.0	1	0.0	0.0		경기도성남시 중원구황송로	송*순	기타
59	여수시	개도리	615	대	1	175	615	대	168.4	1	0.0	-6.6		경남김해시활 천로208번길	신*욱	수취 불명
	여수시	개도리	616	대	1	324	616	대	341.2	1	17.2	0.0				

60	여수시	개도리	451	전	1	1240	451	전	1240.0	1	0.0	0.0		광주광역시남 76번 주경열로 구길	엄*숙	폐문재
61	여수시	개도리	462	대	1	122	462	대	122.0	1	0.0	0.0		여수시덕충2 길	윤*기	폐문재
	여수시	개도리	463	대	1	126	463	대	126.0	1	0.0	0.0				
62	여수시	개도리	561-2	대	1	165	561-2	대	178.8	1	13.8	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윤*현	수취불명
63	여수시	개도리	622-1	도	1	13	622-1	도			0.0	-13.0	폐쇄	여수시 군자3길	이*묵	수취불명
	여수시	개도리	산584	임	1	2083	716-1	임	1439.1	1	0.0	-643.9				
64	여수시	개도리	1240	대	1	172	1240	대	233.2	1	61.2	0.0		여수시 관문서4길	이** 등	폐문재
65	여수시	개도리	67	대	1	169	67	대	120.9	1	0.0	-48.1		여수시 화정면 월항안길	이*섭	이사불명
66	여수시	개도리	1132	대	1	384	1132	대	384.0	1	0.0	0.0		여수시화정면 개도화산3길	이*상	이사불명
67	여수시	개도리	214	대	1	60	214	대			0.0	-60.0	폐쇄	여수시 고소5길	이*성	폐문재
68	여수시	개도리	226-1	답	1	350	226-1	답	302.8	1	0.0	-47.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송도로114번 길	이*순	폐문재
69	여수시	개도리	884	전	1	622	884	전	599.1	1	0.0	-22.9		여수시 광무북4길	이*만	폐문재
70	여수시	개도리	593	대	1	136	593	대	157.3	1	21.3	0.0		부산광역시부 산진구양연로 34번길	이*자	폐문재
71	여수시	개도리	480	전	1	2366	480	전	2366.0	1	0.0	0.0		여수시 고소8길	이*현	폐문재
	여수시	개도리	594	대	1	46	594	대	54.3	1	8.3	0.0				
	여수시	개도리	595	대	1	159	595	대	142.9	1	0.0	-16.1				
72	여수시	개도리	565	대	1	248	565	대	248.0	1	0.0	0.0		부산연제구중 양대로1124 번길	이*국	폐문재

73	여수시	개도리	200	전	1	132	200	전	132.0	1	0.0	0.0		여수시 고소5길	이*모	폐문 부재
74	여수시	개도리	1407- 7	전	1	221	1407-7	전	199.5	1	0.0	-21.5		여수시광무남 1길	임*덕	폐문 부재
75	여수시	개도리	136	대	1	304	136	대	197.3	1	69.4	0.0		여수시여서1 로	임*복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136-5	대	176.1	1	0.0	0.0				
76	여수시	개도리	226-4	답	1	364	226-4	답	292.9	1	0.0	0.0		여수시대첩비 길	임*오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226-5	답	71.1	1	0.0	0.0				
	여수시	개도리	226	답	1	330	226	답	299.3	1	0.0	-30.7				
77	여수시	개도리	1134	전	1	324	1134	전	324.0	1	0.0	0.0		여수시 신월로	정*열	폐문 부재
78	여수시	개도리	1525	대	1	298	1525	대	298.0	1	0.0	0.0		여수시 봉산남6길	정*명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1571	전	1	1589	1571	전	1589.0	1	0.0	0.0				
79	여수시	개도리	1518	답	1	758	1518	답	720.2	1	0.0	-37.8		여수시 봉산남6길	정*연	폐문 부재
80	여수시	개도리	71	대	1	165	71	대	197.1	1	32.1	0.0		여수시 덕충2길	정*집	폐문 부재
81	여수시	개도리	560	대	1	99	560	대	76.2	1	0.0	-22.8		여수시화정면 개도화산1길	정*두	이사 불명
82	여수시	개도리	502-2	대	1	311	502-2	대	269.6	1	0.0	-41.4		여수시좌수영 로	정*협	폐문 부재
83	여수시	개도리	579-1	대	1	264	579-1	대	221.9	1	0.0	-42.1		여수시화정면 개도화산1길	정*기	이사 불명
84	여수시	개도리	572	대	1	212	572	대	219.0	1	7.0	0.0		경남 거제시 옥포로	정*철	폐문 부재
85	여수시	개도리	1563- 2	도	1	73	1563-2	도	73.0	1	0.0	0.0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정*란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1563- 4	대	1	297	1563-4	대	297.0	1	0.0	0.0				
86	여수시	개도리	1562	대	1	309	1562	대	209.8	1	0.0	-35.8		인천광역시남 동구논현남로	정*숙	폐문 부재
	여수시	개도리					1562-2	대	63.4	1	0.0	0.0				

87	여수시	개도리	1610	대	1	12	1610	대			0.0	-12.0	폐쇄	여수시구봉길	정*순	수취불명
	여수시	개도리	1611-6	도	1	81	1611-6	도	73.6	1	0.0	-7.4				
88	여수시	개도리	465	대	1	354	465	대	354.0	1	0.0	0.0		세종특별자치시보듬3로	정*규	폐문부재
89	여수시	개도리	222-1	대	1	331	222-1	대	377.8	1	46.8	0.0		여수시화정면 신흥길	정*임	이사불명
90	여수시	개도리	634-2	전	1	699	634-2	전	627.1	1	0.0	-71.9		여수시 문수북5길	정*식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634-5	전	1	176	634-5	전	247.9	1	71.9	0.0				
	여수시	개도리	635-2	대	1	228	635-2	대	234.9	1	6.9	0.0				
91	여수시	개도리	588	도	1	7	588	도			0.0	-7.0	폐쇄	여수시미평로	조*자	폐문부재
92	여수시	개도리	1238	대	1	489	1238	대	489.0	1	0.0	0.0		여수시여서로	조*규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1241	대	1	324	1241	대	354.7	1	30.7	0.0				
93	여수시	개도리	521	대	1	321	521	대	321.0	1	0.0	0.0		여수시고소5길	최*옥	폐문부재
94	여수시	개도리	502-1	대	1	192	502-1	대	198.4	1	6.4	0.0		여수시미평11길	한*석	폐문부재
	여수시	개도리	561-1	전	1	1911	561-1	전	1403.9	1	0.0	-507.1				
	여수시	개도리					561-3	전	228.2	1	228.2	0.0				
95	여수시	개도리	301-1	전	1	511	301-1	전	590.2	1	79.2	0.0		여수시여문2로	황*옥	폐문부재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7.

**여 수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32	8	국지 도로	165	신월동 금호타운입구	소2-552 신월동80-12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1032	8~10	국지 도로	290	신월동 금호타운입구	소2-552 신월동80-12도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2-1032	소로2-1032	- 폭원 변경 : 당초 8m→변경 8~10m - 연장 변경 : 당초 165m→변경 290m - 선형 변경	· 현황 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일부 선형 조정 · 편측 보도 설치를 위한 일부 폭원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신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신월동 산 237번지 일원	-	증)20,782	20,78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	여수시 신월동 산 237번지 일원	20,782	· 신월동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3.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1) (1)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 없음
- 3)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	20,782	여수시 신월동 산 237번지 일원	20,782	-1 부여

- 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4.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5. 열람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6. 공고기간 : 2017. 7. 7. ~ 2017. 7. 21.(14일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허가민원과 ☎ 061-659-4098, 도시계획과 ☎ 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주삼동 931-8 외 1필지 상 건축물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 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32.9m	6m	268㎡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주삼동	931-8	도면참조	6m	253㎡	“	
”	940-5	”	6m	15㎡	“	
이하빈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6.

#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둔덕동 189-56번지 상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2.8m	5m	15㎡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둔덕동	189-56	2.8m	5m	15㎡	“	
이하빈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6.

여 수 시 장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393	마을어업	도수, 나잠 등	31	삼산 덕촌	2017.08.13 2027.08.12	-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덕촌 어촌계	10123 재개발
11737	패류양식	바닥식	10	화정 여자	2017.07.16 2027.07.15	1,000	여수시 신월2길 35, 103동 ***호 (신월동, 대주a)	최동기 외 1인	10729 재개발
11738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5	남면 화태	2017.07.07 2027.07.06	-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태 어촌계	11645 대체개발
11739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4	남면 화태	2017.07.07 2027.07.06	-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태 어촌계	11644 대체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7. 7. 07.

# 여 수 시 장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여수시 화치동 일원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축조 배수로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7. 7.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응천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2. 사업시행자 : 여수시
3. 공고기간 : 2017. 7 . 7 . ~ 2017. 7 . 21 .
4. 지적공부 열람 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5. 공고내용 : 지적공부 확정 시행

토지소재지		확정현황			비 고
동	지번	필지수	면적(m <sup>2</sup> )	시행 지적공부	
화치동	1482번지 등	5	17,430.3	토지대장 (5매) 경계점좌표등록부 (5매)	

### 6. 기 타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61-659-33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 종 전 조 서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축조 배수로시설공사

연번	소재지	토 지 내 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계	24필지			17,704	
1	화치동	529-2	전	8	
2	화치동	529-12	전	367	
3	화치동	529-17	전	472	
4	화치동	530-1	전	164	
5	화치동	531	답	149	
6	화치동	531-4	임야	367	
7	화치동	531-5	답	684	
8	화치동	531-6	제방	506	
9	화치동	산86-4	임야	2976	
10	화치동	산86-5	임야	188	
11	화치동	산86-6	임야	1362	
12	화치동	산86-7	임야	7	
13	화치동	산86-8	임야	1807	
14	화치동	산85-5	임야	481	
15	화치동	산85-11	임야	198	
16	화치동	산85-12	임야	333	
17	화치동	산85-13	임야	1146	
18	화치동	산85-16	임야	122	
19	화치동	산85-17	임야	148	
20	화치동	산85-18	임야	1499	
21	화치동	산85-24	임야	28	
22	화치동	산85-25	임야	3048	
23	화치동	산85-26	임야	7	
24	화치동	산85-27	임야	1637	

# 확 정 조 서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축조 배수로시설공사

연번	소재지	토 지 내 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계	5필지			17,430.3	
1	화치동	1482	제방	4869.4	
2	화치동	1483	제방	5737.8	
3	화치동	1484	잡종지	3298.7	
4	화치동	1485	도로	685.1	
5	화치동	1486	제방	2839.3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7 일

여수시장

이석현



여수시 조례 제1275호

붙임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통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통장·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7일

여수시장

이재원 인



여수시 조례 제1276호

붙임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1부.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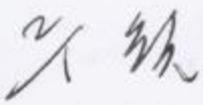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제중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17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277호

붙임 여수시 제중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수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그 수수료를”를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로 하고,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는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1호가 중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마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사 중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1항 2호 중 “그 밖의”는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3호 중 “수수료”는 삭제한다.

제8조 중 “조례 시행에”를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로 한다.

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액	비 고
<b>【증 명】</b>			
<b>1. 신상에 관한 증명</b>			
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복사	1통	300	
<b>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b>			
가. 영업주	1통	500	
나. 중소기업자	1통	500	
다.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	
라. 농가, 비농가	1통	200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500	
나. 생산실적	1통	500	
다. 수출실적	1통	500	
라. 납품실적	1통	500	
마. 건물사용	1통	500	
바. 공장원료 수요	1통	500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500	
아. 시설보유증명	1통	1,000	
자.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차.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카.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	1통	500	
하. 농지매매사실확인	1통	700	
<b>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b>			
가. 공부의 등본·초본 교부			
• 대장문서	1통	500	
• 토지도면	1통	500	지적관계 제외
• 건물도면	1통	500	
나.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	300	
• 초과료	10분	1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액	비 고
• 사본	당		
1매당		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300	
<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	
다.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통	1,000	
라.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000	
마.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바.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	
사.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1,000	
<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			
가.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열 람	1주택	300	
<b>7. 회계에 관한 증명</b>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1,000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1,000	
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	1통	1,000	
라. 납품·공사·제조 사실증명(개정 2009. 3. 13)	1통	1,000	
마.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바.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000	
<b>8. 주택에 관한 증명</b>			
가. 철거사실증명	1통	400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500	
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1건	2,000	
<b>9. 기타 제증명</b>			
가.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b>[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b>			
<b>1. 일반행정 관계</b>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액	비 고
가.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1,000	
나.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1건	600	
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b>2. 산림 관계</b>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1건	500	
나.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	
<b>3. 농수산 관계</b>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400	
나. 월동장 및 월하장지정 신청	1건	3,000	
다.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라.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해제 허가 신청	1건	1,000	
마.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2,000	
바.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1건	1,500	
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1건	1,500	
아.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신설 2012. 3. 9)	1건	4,000	
자.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5,000	
차.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	1건	2,000	
카.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	
<b>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가.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건	2,000	
나.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2,000	
<b>5. 건설, 환경 관계</b>			
가.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1건	2,000	
나. 공(시)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신청	1건	2,000	
다.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 신청	1건	2,000	
라.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000	
마.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2,000	
바. 토지 사용승락서	1건	2,000	
사.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2,000	
아.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1,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액	비 고
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건	1,500	
<b>6. 보건, 사회 관계</b>			
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설치 허가 신청	1건	1,200	
나.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신고	1건	20,000	
다.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라.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28,000	
마.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6,500	
바. 위생처리업 신고	1건	28,000	
사.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6,500	
<b>7. 소하천 관계</b>			
가. 소하천 공사(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신청	1건	1,000	
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다.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b>8. 상하수도 관계</b>			
가. 급수사용료 납부증명	1건	700	

## 신 · 구조문대비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수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u>그 수수료를 징수하지</u> 아니 한다. 다만, <u>지적·유산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u></p> <p>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p> <p>마.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p> <p>사. 「<u>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p> <p>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행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u>그 밖의 제증명 등</u></p> <p>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및 소대장과 이·통·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p> <p>제8조(시행규칙) 이 <u>조례 시행에</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 &lt;삭 제&gt;</p> <p>가. ----- 규정에 의한 수급자</p> <p>마.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p> <p>사.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p> <p>2 ----- ----- &lt;삭 제&gt;</p> <p>3. ----- ----- &lt;삭 제&gt;</p> <p>제8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을</u> 위하여 -----.</p>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b>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b>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b>【증 명】</b></td> </tr> <tr> <td colspan="4"><b>1. 신상에 관한 증명</b></td> </tr> <tr> <td>가. 부양가족사실증명</td> <td>1통</td> <td>700</td> <td></td> </tr> <tr> <td>나.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2.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 colspan="4"><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td> </tr> <tr> <td>가.~사.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아. 공장등록증명</td> <td>1건</td> <td>1,000</td> <td></td> </tr> <tr> <td>자.~카.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타. 무적자 사실확인</td> <td>1통</td> <td>500</td> <td></td> </tr> <tr> <td>파. 독자 사실확인</td> <td>1통</td> <td>500</td> <td></td> </tr> <tr> <td>하.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거.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td> <td>1통</td> <td>500</td> <td></td> </tr> <tr> <td>너.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4.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 colspan="4"><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td> </tr> <tr> <td>가.~아.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td> </tr> <tr> <td>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컬러 발급의 경우)</td> <td>1필지</td> <td>1,000 (1,500)</td> <td></td> </tr> <tr> <td colspan="4"><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td> </tr> <tr> <td>가.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td> <td>1통</td> <td>8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증 명】</b>				<b>1. 신상에 관한 증명</b>				가. 부양가족사실증명	1통	700		나. (생략)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가.~사. (생략)	(생략)	(생략)		아.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자.~카. (생략)	(생략)	(생략)		타. 무적자 사실확인	1통	500		파. 독자 사실확인	1통	500		하. (생략)	(생략)	(생략)		거.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1통	500		너. (생략)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생략)		<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가.~아. (생략)	(생략)	(생략)		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1,000 (1,500)		<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				가. (생략)				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	800		<p>[별표 1] <b>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b>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b>【증 명】</b></td> </tr> <tr> <td colspan="4"><b>1. 신상에 관한 증명</b></td> </tr> <tr> <td>가.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나.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2.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colspan="4"><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td> </tr> <tr> <td>가.~사.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아.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자.~카.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타.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파.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하.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거.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너.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4.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colspan="4"><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td> </tr> <tr> <td>가.~아.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자.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lt;삭 제&gt;</td> <td></td> <td>&lt;삭 제&gt;</td> <td></td> </tr> <tr> <td colspan="4"><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td> </tr> <tr> <td>가.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lt;삭 제&gt;</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증 명】</b>				<b>1. 신상에 관한 증명</b>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삭 제>	<삭 제>	<삭 제>		자.~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 <삭 제>	<삭 제>	<삭 제>		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 <삭 제>	<삭 제>	<삭 제>		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가.~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삭 제>	<삭 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증 명】</b>																																																																																																																																																																																					
<b>1. 신상에 관한 증명</b>																																																																																																																																																																																					
가. 부양가족사실증명	1통	700																																																																																																																																																																																			
나. (생략)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가.~사. (생략)	(생략)	(생략)																																																																																																																																																																																			
아.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자.~카. (생략)	(생략)	(생략)																																																																																																																																																																																			
타. 무적자 사실확인	1통	500																																																																																																																																																																																			
파. 독자 사실확인	1통	500																																																																																																																																																																																			
하. (생략)	(생략)	(생략)																																																																																																																																																																																			
거.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1통	500																																																																																																																																																																																			
너. (생략)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생략)																																																																																																																																																																																			
<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가.~아. (생략)	(생략)	(생략)																																																																																																																																																																																			
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1,000 (1,500)																																																																																																																																																																																			
<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																																																																																																																																																																																					
가. (생략)																																																																																																																																																																																					
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증 명】</b>																																																																																																																																																																																					
<b>1. 신상에 관한 증명</b>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삭 제>	<삭 제>	<삭 제>																																																																																																																																																																																			
자.~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 <삭 제>	<삭 제>	<삭 제>																																																																																																																																																																																			
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 <삭 제>	<삭 제>	<삭 제>																																																																																																																																																																																			
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b>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가.~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b>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b>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다.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 (생략) <b>【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b> <b>1. 일반행정 관계</b> 가. 공유재산의 대부 • 신규 신청 •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나.~라. (생략) <b>2. (생략)</b> <b>3. 농수산 관계</b> 가. (생략) 나. 어업면허 신청 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라.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마.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바.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사.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아. (생략) 자.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차.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 카. 어업권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1주택  (생략)	800  (생략)		다.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삭 제> • (현행과 같음) <b>【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b> <b>1. 일반행정 관계</b> 가. <삭 제> • <삭 제> • <삭 제> 나.~라. (현행과 같음) <b>2. (현행과 같음)</b> <b>3. 농수산 관계</b>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아. (현행과 같음) 자. <삭 제> 차. <삭 제> 카.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1건	4,000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	1건	4,000		파. <삭 제>	<삭 제>	<삭 제>	
하. 구획어업 허가 신청	1건	4,500		하. <삭 제>	<삭 제>	<삭 제>	
거.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	1건	3,000		거. <삭 제>	<삭 제>	<삭 제>	
너.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자망어업 · 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 · 낭장망어업 · 각망어업)	1건	5,000		너. <삭 제>	<삭 제>	<삭 제>	
더.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양식어업 · 정치망어업)	1건	9,000		더. <삭 제>	<삭 제>	<삭 제>	
러. 어업허가 유예 신청	1건	2,000		러. <삭 제>	<삭 제>	<삭 제>	
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머. <삭 제>	<삭 제>	<삭 제>	
버.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2,000		버. <삭 제>	<삭 제>	<삭 제>	
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1건	1,000		서. <삭 제>	<삭 제>	<삭 제>	
어.~커. (생략)	(생략)	(생략)		어.~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터. 내수면 어업신고	1건	1,000		터. <삭 제>	<삭 제>	<삭 제>	
피. (생략)				피. (현행과 같음)			
허. 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 재발급 신청	1건	1,000		허. <삭 제>	<삭 제>	<삭 제>	
고. 어업면허증 · 관리선 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		고. <삭 제>	<삭 제>	<삭 제>	
노. 근해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		노. <삭 제>	<삭 제>	<삭 제>	
도.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4,000		도.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2,000	
로.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로.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모.~보. (생략)	(생략)	(생략)		모.~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 어업 신고	1건	2,000		소. <삭 제>	<삭 제>	<삭 제>	
오. 어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		오. <삭 제>	<삭 제>	<삭 제>	
조. 어업 휴업(휴업 연장) 신고	1건	1,500		조. <삭 제>	<삭 제>	<삭 제>	
초. 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초. <삭 제>	<삭 제>	<삭 제>	
코.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코. <삭 제>	<삭 제>	<삭 제>	
토.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		토. <삭 제>	<삭 제>	<삭 제>	
포. (생략)	(생략)	(생략)		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호. 어선등록 및 어선변경 등록 신청(신설 2012. 3. 9)	1건	3,000		호. <삭 제>	<삭 제>	<삭 제>	
구. 증서(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재발급 신청	1건	1,000		구. <삭 제>	<삭 제>	<삭 제>	
누.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신설 2012. 3. 9)	1건	30,000		누. <삭 제>	<삭 제>	<삭 제>	
두. 비료 수입업 신고(신설 2012. 3. 9)	1건	25,000		두. <삭 제>	<삭 제>	<삭 제>	
루.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	1건	7,500		루. <삭 제>	<삭 제>	<삭 제>	
무.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무. <삭 제>	<삭 제>	<삭 제>	
부.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부. <삭 제>	<삭 제>	<삭 제>	
수.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		수. <삭 제>	<삭 제>	<삭 제>	
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 명칭)	1건	1,000		우. <삭 제>	<삭 제>	<삭 제>	
주.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주.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추.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추. <삭 제>	<삭 제>	<삭 제>	
쿠.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쿠. <삭 제>	<삭 제>	<삭 제>	
투.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투. <삭 제>	<삭 제>	<삭 제>	
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푸. <삭 제>	<삭 제>	<삭 제>	
후.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후. <삭 제>	<삭 제>	<삭 제>	
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		그. <삭 제>	<삭 제>	<삭 제>	
느.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		느. <삭 제>	<삭 제>	<삭 제>	
드.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드. <삭 제>	<삭 제>	<삭 제>	
르. 유해어벌 사용허가 신청(수산자원관리법)	1건	3,000		르. <삭 제>	<삭 제>	<삭 제>	
므.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므. <삭 제>	<삭 제>	<삭 제>	
브.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브. <삭 제>	<삭 제>	<삭 제>	
스.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스. <삭 제>	<삭 제>	<삭 제>	
으.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으. <삭 제>	<삭 제>	<삭 제>	
즈.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즈. <삭 제>	<삭 제>	<삭 제>	
츠.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츠. <삭 제>	<삭 제>	<삭 제>	
크.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	1건	1,000		크. <삭 제>	<삭 제>	<삭 제>	
트.~흐. (생략)	(생략)	(생략)		트.~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b>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b>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다. (생략)	(생략)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라. <삭 제>	<삭 제>	<삭 제>	
마.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마. <삭 제>	<삭 제>	<삭 제>	
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바. <삭 제>	<삭 제>	<삭 제>	
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사. <삭 제>	<삭 제>	<삭 제>	
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아. <삭 제>	<삭 제>	<삭 제>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차. <삭 제>	<삭 제>	<삭 제>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카. <삭 제>	<삭 제>	<삭 제>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파.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5. 건설, 환경 관계</b>				<b>5. 건설, 환경 관계</b>			
가.~자. (생략)	(생략)	(생략)		가.~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차. <삭 제>	<삭 제>	<삭 제>	
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카. <삭 제>	<삭 제>	<삭 제>	
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파. <삭 제>	<삭 제>	<삭 제>	
<b>6. 보건, 사회 관계</b>				<b>6. 보건, 사회 관계</b>			
가.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나.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1건	40,000		라. <삭 제>	<삭 제>	<삭 제>	
마.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		마. <삭 제>	<삭 제>	<삭 제>	
바.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		바. <삭 제>	<삭 제>	<삭 제>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사. <삭 제>	<삭 제>	<삭 제>	
아. (생략)	(생략)	(생략)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자.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차. <삭 제>	<삭 제>	<삭 제>	
카.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신청	1건	5,500		카. <삭 제>	<삭 제>	<삭 제>	
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러. (생략)				파.~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		머. <삭 제>	<삭 제>	<삭 제>	
버.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		버. <삭 제>	<삭 제>	<삭 제>	
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서. <삭 제>	<삭 제>	<삭 제>	
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어. <삭 제>	<삭 제>	<삭 제>	
저.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1건	30,000		저. <삭 제>	<삭 제>	<삭 제>	
쳐.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쳐. <삭 제>	<삭 제>	<삭 제>	
커.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커. <삭 제>	<삭 제>	<삭 제>	
<b>7. 문화, 예술 관계</b>				<b>7. 문화, 예술 관계</b>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다.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영화 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라. <삭 제>	<삭 제>	<삭 제>	
마. 영화 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마.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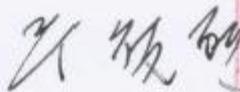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바. <삭 제>	<삭 제>	<삭 제>	
사.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사. <삭 제>	<삭 제>	<삭 제>	
아. 노래 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아. <삭 제>	<삭 제>	<삭 제>	
자. 노래 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		차. <삭 제>	<삭 제>	<삭 제>	
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카. <삭 제>	<삭 제>	<삭 제>	
타. 게임 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		타. <삭 제>	<삭 제>	<삭 제>	
파. 게임 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		파. <삭 제>	<삭 제>	<삭 제>	
하.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하. <삭 제>	<삭 제>	<삭 제>	
거. 청소년 게임 제공업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거. <삭 제>	<삭 제>	<삭 제>	
너.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너. <삭 제>	<삭 제>	<삭 제>	
더.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신고	1건	20,000		더. <삭 제>	<삭 제>	<삭 제>	
러. (게임 제작, 게임 배급, 청소년 게임 제공,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 등록 또는 신고 사항 변경 신고	1건	5,000		러. <삭 제>	<삭 제>	<삭 제>	
머. 영화업(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신고 (신설 2010. 5. 17)	1건	20,000		머. <삭 제>	<삭 제>	<삭 제>	
버. 영화업(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변경신고(신설 2010. 5. 17)	1건	10,000		버. <삭 제>	<삭 제>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서. 영화업(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신설 2010. 5. 17)	1건	5,000		서. <삭 제>	<삭 제>	<삭 제>	
어.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신설 2010. 5. 17)	1건	20,000		어. <삭 제>	<삭 제>	<삭 제>	
저.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 (신설 2010. 5. 17)	1건	10,000		저. <삭 제>	<삭 제>	<삭 제>	
<b>8. 소하천 관계</b>				<b>8. 소하천 관계</b>			
가.~라. (생략)	(생략)	(생략)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마. <삭 제>	<삭 제>	<삭 제>	
<b>9. (생략)</b>	(생략)	(생략)		<b>9. (현행과 같음)</b>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b>10. 부동산 중개업 관계</b>				<b>10. 부동산 중개업 관계</b>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삭 제>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 <삭 제>	<삭 제>	<삭 제>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		• <삭 제>	<삭 제>	<삭 제>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나. <삭 제>	<삭 제>	<삭 제>	
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다.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라. <삭 제>	<삭 제>	<삭 제>	
<b>11. 체육지원 관계</b>				<b>11. 체육지원 관계</b>			
가.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나.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홍보  
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7일

여수시장  인



여수시 조례 제1278호

붙임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활동 사항은”을 “임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을 “참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투자유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화에 관한 사항”을 “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항”을 “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위촉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사표시가 있”을 “의사표시를 하”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 또는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며, 정기 간담회는 매년 1회, 임시 간담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여비 등”을 “여비 또는 활동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 부여된 기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임무) 여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u>주요활동 사항</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u>활동에 관한 사항</u></li> <li>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u>참여활동에 관한 사항</u></li> <li>3. 기업 및 <u>투자유치에 관한 사항</u></li> <li>4.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 · 관광 <u>활성화에 관한 사항</u></li> <li>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 · 수 · 축산업 경쟁력 <u>강화에 관한 사항</u></li> <li>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항</u></li> </ol> <p>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u>자</u></li> </ol> <p>② (생략)</p> <p>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u></p> <p>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2조(임무) ----- ----- <u>임무</u> <u>는</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활동</u></li> <li>2. ----- ----- <u>참여활동</u></li> <li>3. ----- <u>투자유치</u></li> <li>4. ----- ----- <u>활성화</u></li> <li>5. ----- ----- <u>강화</u></li> <li>6. ----- ----- <u>활동</u></li> </ol> <p>제3조(위촉) ① ----- ----- <u>사람</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 ----- ----- <u>사람</u></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 --- <u>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u></li> </ol> <p>제4조(위촉 해제) ----- -----</p>

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제5조(운영)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② (생략)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위촉을 -----.

1. ---- 의사표시를 하-----  
-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 또는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며, 정기 간담회는 매년 1회, 임시 간담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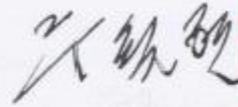
제6조(예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여비  
또는 활동비 등 -----.  
<후단 삭제>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11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279호

붙임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20조의 아동·청소년권리지킴이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아동·청소년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환경안전망의 구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의 확대
  - 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 나. 「청소년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3.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아동·청소년 학부모

4. 아동·청소년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제17조(아동·청소년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 및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이하“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위원회는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니터링, 아동·청소년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아동·청소년권리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킴이(이하“권리지킴이”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2.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권리지킴이는 임기 내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시장(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니터링에 참여한 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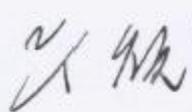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17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280호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를“(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각각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각각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를 각각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을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으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별표 10의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
4.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금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1시간	최초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2급지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 단, 시설물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자동차 구분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소형	200원	5,000원	10,000원
대형	300원	8,000원	16,000원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금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 30분 이내	최초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급지	소형	500	30분마다 500	5,000	60.000
	대형	700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2급지	소형	300	10분마다 100	3,500	30.000
	대형	500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시장이 1급지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3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2월 : 08:00~19:00

3. 차량의 구분

가. 소형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나. 대형 : 소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180㎡)						
2.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 설치기준 (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td> </tr> </tbody> </table> <p>○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대/㎡)	85㎡ 이하	1/85	85㎡ 초과	1/70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대/㎡)						
85㎡ 이하	1/85						
85㎡ 초과	1/70						
4.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하여야 하는 자동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및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주민의 자동차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③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인근 주민·사업자·상근자의 구체적 범위,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1.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  
-----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  
-----  
-

③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  
-----  
-----  
-----  
-----  
-----  
-----  
-----  
-----  
-----  
-----.

④ -----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  
-----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  
-----  
-----  
-----  
-----  
-----  
-----  
-----.

⑤ -----  
-----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  
-----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  
-----.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급지구분	자동차구분	최초 1시간	최초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주간	야간	주·야간
1 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2 급지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신 설>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급지구분	자동차구분	최초 1시간	최초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주간	야간	주·야간
1 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2 급지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 단, 시설물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자동차구분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토·일 및 공휴일
소형	200원	5,000원	10,000원
대형	300원	8,000원	16,000원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 30분 이내	최초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급지	소형	500	30분마다 500	5,000	60,000
	대형	700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2급지	소형	300	10분마다 100	3,500	30,000
	대형	500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 설>

나. (생 략)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 구분	최초 30분 이내	최초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급지	소형	500	30분마다 500	5,000	60,000
	대형	700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2급지	소형	300	10분마다 100	3,500	30,000
	대형	500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에 시장이 1급지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현행과 같음)

2. 주·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00~20:00

나. 야간 : 20:00~08:00

3.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별표 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3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2월 : 08:00~19:00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80㎡당 1대 (시설면적/180㎡)
2.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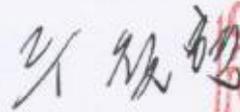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대/㎡)
	85㎡ 이하	1/85
85㎡ 초과	1/70	

<p>3. <u>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u></p>	<p>○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4. <u>「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u></p>	<p>○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p>
<p>5. <u>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u></p>	<p>○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p>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7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281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급수장치의 소유자, 그 밖에 급수장치의 명의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돗물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가구분할적용시”를 “가구분할적용 시”로, “15톤미만”을 “15톤 미만”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도계량기 각 개의”를 “각 계량기의”로 “부과한다”를 “한다”로 한다.

④건물의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이하 “요금조정”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를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수량의 인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를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정용으로서 1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 단,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을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으로 하고 제1항 중 “수도계량기가”를 “수도계량기에”로 “인정할 때에는”을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공차”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을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자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를 “시장은 매월분의 납부고지서에 이전의 요금 미납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사용료를”을 “요금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수도 사용자등”을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돗물을 공급받은자가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text{가산금} =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12 \times \text{연체일수} / 365$$

제37조제1항 단서 중 “요금납부 고지서는 수도 사용자의 별도”를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로, “전자고지(E-Mail)로 고지할”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금의 납부고지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고지서에”를 “납부고지서”로, “발행할 수 있으며”를 “발행하며”로,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그 밖에 일시적”을 “일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급수종료후”를 “급수종료 후”로 한다.

제39조 제목 “(제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각 호에 따라 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를 “시장이”로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호당 200원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

③ 3회 이상 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급수표시”)를 (“급수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 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 할”을 “정지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2월이상”을 “2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수정지처분을 3월이내”를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는”을 “제보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후”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사기”를 “사기나”로, “수단으로 사용요금”을 “방법으로 요금”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별표 6에 따른 위반내용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1 제목“(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을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2.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48조제1항 전단 중 “90일이내”를 “9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 제목“(권한의 위임)”을“(사무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를 “시장은 이”로,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한다.

제5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을 위하여”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p> <p>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p>	<p>제27조(요금의 징수) 수돗물을 공급 받은 자(급수장치의 소유자, 그 밖에 급수장치의 명의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돗물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28조(요금) ----- ----- ----- ----- ----- -. &lt;단서 삭제&gt;</p>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② (생략)</p> <p>③제2항의 <u>가구분할적용시</u>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 15톤씩을 공제한 잔여량이 <u>15톤미만</u>인 경우 해당 업종의 사용량을 15톤으로 하고 잔여량을 가정용으로 한다.</p>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가구분할적용 시</u> ----- ----- ----- ----- <u>15톤 미만</u>----- ----- ----- -----</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② (생략)</p> <p>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현행	개정안
<p>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u>5일</u>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 ----- ----- ----- <u>5일</u> 이내 ----- -----.</p>
<p>④<u>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한다.</u> 다만, <u>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에서 발생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u>(개정 2007. 1. 16, 2013. 1. 10)</p>	<p>④<u>건물의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이하 “요금조정”이라 한다)한다.</u> 이 경우 <u>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u> &lt;단서 삭제&gt;</p>
<p>⑤제4항에 따라 <u>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u></p> <p>1. ~ 2. (생략)</p>	<p>⑤----- ----- ----- ----- ----- ----- 한다.</p>
<p>⑥<u>동일 건물 또는 동일 번지내의</u></p>	<p>1. ~ 2. (현행과 같음) ⑥-----</p>

현행	개정안
<p>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u>수도계량기 각 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 부과한다.</u></p>	<p>----- ----- ----- -- <u>각 계량기의</u>----- ----- 한다.</p>
<p>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u>(개정 2009. 12. 31, 2013. 1. 10)</p>	<p>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 -----, ----- <u>해당하는 경우의 사용수량의 인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u></p>	<p>3. ----- <u>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u></p>
<p>② <u>가정용으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u>(개정 2001. 8. 13, 2013. 1. 10)</p>	<p>② <u>가정용으로서 1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도물을 공급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 단,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u>(개정 2001. 8. 13, 2013. 1. 10)</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3)</p> <p>5. (생략)</p> <p>② (생략)</p> <p>③ <u>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3회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u></p> <p>제40조의2(감면신청서 제출) 제40조제1항제3호에 <u>따른</u>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2조(급수표시) ①<u>수도사용자 등</u>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p> <p>② (생략)</p> <p>제43조(급수정지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p> <p>-----.</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3회 이상 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lt;삭제&gt;</p> <p>제40조의2(감면신청서 제출) ----- ----- 따라 ----- ----- ----- -----.</p> <p>제42조(급수표지) ①<u>수도사용자등</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급수정지처분) ①----- -----</p>

현행	개정안
<p>자에 대하여 급수를 <u>정지</u> 할 수 있다.</p> <p>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u>2월이상</u>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 12. 31)</p> <p>2. ~ 9. (생략)</p> <p>② (생략)</p> <p>③제1항에 의한 <u>급수정지처분을 3월이내로</u> 하되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u>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4조(포상금 지급) ①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u>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는</u>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u>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u>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u>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에 의하여</u> 확정된 <u>후</u>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p> <p>제46조(과태료) ①<u>사기</u> 그 밖의 부정한 <u>수단으로 사용요금</u> 또는 분</p>	<p>-----  ----- <u>정지할</u> -----.</p> <p>1. -----  -----  -----  ----- <u>2월 이상</u> -----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u>-----  -----  -----.</p> <p>제44조(포상금 지급) ①-----  ----- <u>제보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u> -----  ----- <u>포상금</u>-----  -----.</p> <p>②-----  -----  ----- <u>후</u> -----  -----.</p> <p>제46조(과태료) ①<u>사기</u>나 -----  ----- <u>방법으로 요금</u>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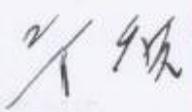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과태료부과 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6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별의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p> <p>③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p>제47조의1(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송달업무 등을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법인, 계약검침원에 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1. 8. 13)</p> <p>②제1항의 계약검침원은 관내 거주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p>	<p>-----</p> <p>-----</p> <p>-----</p> <p>-----</p> <p>-----</p> <p>- 과태료를 부과한다. &lt;단서 삭제&gt;</p> <p>②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별표 6에 따른 위반내용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p> <p>&lt;삭 제&gt;</p> <p>제47조의2(업무의 위탁) 「수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p> <p>2.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p>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u>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u></p>
<p>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90일이내</u>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제48조(이의신청) ① ----- ----- ----- <u>90일 이내</u>----- ----- . &lt;후단 삭제&gt;</p>
<p>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60일이내</u>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 ----- <u>60일 이내</u>----- ----- .</p>
<p>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lt;삭 제&gt;</p>
<p>제49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p>			
<p>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5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 -----.</p>		
<p>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1조(시행규칙) ----- 시행을 위하여 ----- -----.</p>		
<p>[별표 5]</p>	<p>[별표 5]</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수 수 료 표</u></p>	<p style="text-align: center;"><u>수 수 료 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td> </tr> </table>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td> </tr> </table>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2017. 6. 19.)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7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282호

붙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text{가산금} = \text{미납액} \times 3/100 \times 12 \times \text{연체일수}/36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u>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제26조(가산금 및 독촉) ----- ----- ----- ----- <u>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u>가산금 = 미납액 × 3/100 × 12 × 연체일수 / 365</u></p>
<p>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u>은행납인</u>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 ----- ----- 15일 이내(<u>은행납부인</u>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 -----</p>